



싱가포르 고등법원, 관할권 및 절차 위반 주장으로 포장된 중재판정 본안에 대한 우회적 공격을 불허하다.

DVV v DVW and another matter [2026] SGHC 164 판결은 중재판정의 본안에 대한 이의를 관할권 문제나 절차상 하자인 것처럼 구성하여 판정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싱가포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비법인 합작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 법률적·실무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줍니다. 이번 AG Insights에서는 이 판결에서 확인된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DVV v DVW and another matter [2026] SGHC 164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비법인 합작회사' 형태로 수행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의 지분은 30%, 피신청인의 지분은 70%였고,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법인 합작회사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신청인을 하수급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 합작투자계약과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두 건의 별도 중재가 진행되었습니다. (1)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분쟁은 SIAC 중재로, (2) 하도급계약에 따른 분쟁은 싱가포르 국내 임의중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는 부분최종판정과 부분비용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분최종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만 산정했을 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급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는 합작투자계약 중재판정부가 합작투자회사 구성원들 사이의 구상 및 책임분담 문제에 대해 판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그 결론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지급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관할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부분최종판정과 부분비용판정 모두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Insights에서는 신청인이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주장한 두 가지 취소 사유와 싱가포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관할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 누락은 ULTRA PETITA 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은 싱가포르 중재법 2001 제 48 조 제 1 항 (a)(iv)를 근거로,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실상 그 문제를 합작투자계약 중재판정부에 넘겼으므로 관할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재법 제 48 조 제 1 항 (a)(iv)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 범위를 넘어 당사자가 판단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정을 내린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범위를 넘어 판단하는 ultra petita 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문제 삼은 것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제기한 쟁점 중 일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청구 범위를 넘어선 판단인 ultra petita 가 아니라, 일부 청구 또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infra petita 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중재법 제 48 조 제 1 항 (a)(vii)에 따른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원칙 위반을 근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제 48 조 제 1 항 (a)(vii)를 취소 사유로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취소 사유를 대신 적용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자연적 정의 원칙 위반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적절한 취소 사유를 전제로 이 문제를 검토하더라도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을 ‘위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다른 중재판정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지급 명령을 추후 내리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합작투자계약이 별도의 중재조항을 둔 별개의 계약이며,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가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책임분담 및 구상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전제되어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할권을 합작투자계약 중재판정부에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는 단지 추후 지급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해당 권한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재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중재판정 본안에 대한 불복

신청인은 또 다른 취소 사유로 중재법 제 48 조 제 1 항 (a)(v)를 원용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중재절차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가 모든 청구와 반대청구에 대해 책임과 손해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 명령까지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준수하지 않은 ‘절차’가 아니라, 중재판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판정의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계약 중재판정부는 네 가지 판정 형식을 검토한 후, 청구 및 반대청구액은 산정하되 지급 명령은 합작투자계약 중재판정부가 책임분담에 관해 판단한 이후로 미루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결국 중재판정부가 선택한 판정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택하여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재절차에 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 및 판정 형식의 타당성을 다투는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절차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분비용판정 취소 신청도 기각

신청인은 비용 액수만 산정하고 지급 명령은 유보한 부분비용판정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첫째, 중재판정부가 일부 청구나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ultra petita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할권 위반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재판정부의 본안 판단에 대한 불만을 '중재절차 위반'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어떤 구제수단이나 어떤 형식의 판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싱가포르 법원이 중재판정의 본안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한된 사유에 따라 중재절차를 감독하는 법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계약의 주체가 비법인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관련 조항 작성 단계에서부터 합작투자자 상호 간은 물론 제 3 자와의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정의할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NNA ER

Partner
+65 9643 4781
d.er@agilaw.com
(Singapore)



ASHLEY ANG

Managing Associate
+65 6808 6235
a.ang@agilaw.com
(Singapore)



JAEHOON LEE

Associate
+65 8983 0629
j.lee@agilaw.com
(Singapore)



10-119130062-1

addleshawgoddard.com

© Addleshaw Goddard LLP. Addleshaw Goddard is an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carried on by Addleshaw Goddard LLP and its associated ent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Addleshaw Goddard group, including how we are regulated, please refer to the Legal Notices on our website. For information about how we process your personal data, please refer to the Privacy Notice on our website.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correct as at the publication date. It is not legal advice, it does not create a solicitor client relationship and no Addleshaw Goddard entity assumes a duty of care or liability to any party in respect of its content.